



보도	2023.10.12.(목) 조간	배포	2023.10.11.(수)		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부국장	김종호	(02-3145-8880)
		담당자	선 임	이경태	(02-3145-8719)

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 - 소비자경보 「주의」 발령 -

■ 소비자경보 2023-21호	
등급	주의 경고 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- ◆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·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*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*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-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“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,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세요”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◆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[소비자 유의사항]

- ①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“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”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!
- ② 정비업체의 허위·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요!
- ③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(☎1332)하세요!

I.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先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
 -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,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.
-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·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※ [참고] 보험사기 적발금액

-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: ('20년) 149억원 → ('21년) 85억원 → ('22년) 136억원

⇒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II.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

1 수리비 허위·과장 청구

[사례① : 허위·과장 정비견적서 발급]

-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
 -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

⇒ 정비업체 운영자 A씨 벌금(600만원)

[사례② :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과장 수리 유도]



□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*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

* 오염방지, 광택 등을 위해 유리 성분이 포함된 코팅제를 차량 외부에 도포하는 행위


○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,960만원 편취

⇒ 정비업체 운영자 B씨, C씨 벌금(각 700만원)



<p>소비자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차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하여 보험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안 됩니다! ◆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행위도 하지 마세요!
<p>정비업체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거짓으로 정비명세서를 작성하거나, 실제 수리내역과 다르게 부풀려 기재하면 안 됩니다! ◆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사고 허위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모에 해당될 수 있어요!

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소비자)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☞ (정비업체)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--	--





이미지 : flaticon.com

2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

[사례 :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]

-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소속직원 E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
 -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,931만원 편취
- ⇒ 정비업체 대표 D씨 벌금(500만원), 소속직원 E씨 기소유예



<p>소비자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차량을 수리할 때는 신부품, 중고품, 재생품, 대체 부품 중 선택하여 정비업체에 의뢰하세요! ◆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!
<p>정비업체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비자가 신부품, 중고품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! ◆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 후 보험사에 신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과장 청구에 해당됩니다!
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소비자) 최종 정비명세서에 비용이 과다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☞ (정비업체) 중고품으로 차량 수리 후 신부품 가격으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미지 : flaticon.com

3 차량 부품가격 과장청구


[사례 :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보험금 청구]


□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

○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% ~ 8%를 임의로 증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,069만원 편취


⇒ 정비업체 대표 F씨 벌금(200만원)



소비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 ◆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물어보세요!
---	---

정비업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보험회사에 부품 비용을 청구할 때 차량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! ◆ 소비자에게 안내한 최종 차량 수리비와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(=보험금)가 같은지 확인하세요!
--	---

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소비자) 차량 수리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선량한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☞ (정비업체) 부품 가격을 비싸게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--	--

이미지 : flaticon.com

Ⅲ.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당부사항

1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허위·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*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.

* 리플렛, 문자메시지 등

2 소비자 당부사항

-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·과장 청구하거나,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
 -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(☎1332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<참고>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s://www.fss.or.kr>)

보험사기 신고방법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 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(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

보험사기 제보 요령

- ▶ **혐의자(업체)**를 **특정**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 등록번호, **증거자료** 등 **구체적인 내용**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.
- ※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,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▶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**보험범죄로 확인**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·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**소청의 포상금**이 **지급**됩니다.